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가단53414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김진수, 강경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동규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양기연

변 론 종 결 2024. 7. 9.

판 결 선 고 2024.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서울 동작구 D건물 E호1) 1/2 지분에 관하여 2022. 2. 24.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서울 동작구 D건물 E호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2. 5. 24. 접수 제758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C의 전 배우자로 C에 대한 양육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C이 아버지인 망 F의 상속재산인 서울 동작구 D건물 E호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소유로 이를 등기한 것이 사해행위인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이라 주장하며, 그 법정상속지분 1/2의 취소를 전제로 C의 책임재산 회복을 구한다.

나.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며,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어서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 바인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의 원고와 같이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C은 2022. 4. 8. 피상속인 망 F(2022. 2. 24. 사망)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같은 달 14. 서울가정법원 2022느단52002호로 수리되었는바, 망인의 사망시로 소급하여 상속인 지위를 상실하고, 위와 같은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위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상 피고 상속일자인 2022. 2. 24.(F의 사망일)를 상속재산분할협의일로 잘못 파악하고 소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원정

1) 원고는 별지를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선행한다.